KOTRA자료 21-166

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특허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발간사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1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 특허 전체 출원 건수는 519.4만 건으로, 미국의 6배, 일본의 12배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대변합니다.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지재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재권 창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보호) 등 주요 법률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악의적 상표선점, 불법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러한 법규 및 제도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미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재권 환경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상당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주적인 경쟁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려면 이러한 지식재산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권리확보와 권리보호를 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에 맞춰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며, 나아가 지재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본 보고서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지재권 정책 방향 외에도 특허, 상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지재권 분쟁사건 심리에 대한 사법해석 등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의 개정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 사항들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지재권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상하이 J&J 지재권 컨설팅의 심상희 변리사와 자문과 감수를 해 주신 주중한국대사관 김근모 특허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KOTRA 중국지역본부장 홍창표

Contents

제1장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중국의 정책 방향 ····· 1

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식재산 관련 합의사항 ····· 4

나. 14.5. 규획 지식재산 관련 주요내용 ····· 10

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실 국무원판공청 의견 ····· 13

제2장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 17

가.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 19

나. 특허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 29

다. 특허출원 보조금 제도 폐지 등 정책변화 ····· 34

제3장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 39

가.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 41

나. 상표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 46

다. 악의적 무단선점행위 단속 등 정책변화 ····· 48

라.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및 사법규정 변화 ····· 55

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 61

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 63

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리(국가표준) ····· 66

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사법 규정 변화 ····· 68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71

가. 요약 ····· 73

나. 시사점 ····· 75

01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중국의 정책 방향

제1장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중국의 정책 방향

2018년 3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시작되었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 기술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과 함께 당분간 양국 간의 글로벌 패권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서막은 2017년 8월 14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영업비밀 침해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이후 선진 유럽국가들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며, 미국이 패권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국의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 경쟁국들에 대하여 지식재산 보호 요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견제를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전세계의 100개 이상의 미국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조사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한 통상압력 및 무역 협상에 활용해 오고 있다.

2020년 4월 30일에 발표된 "스페셜 301조" 보고서[1]에서 중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과 함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다. 중국이 G2 국가로 급부상하고 향후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그간의 경쟁국에 대한 견제와는 달리 군사, 외교, 무역, 기술 등 전방위적인 견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는 지식재산권이 있다.[2]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테넷 등으로 대변되는 현재 진행형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으로 대변되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한 국가의 역량과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면서 휴전상태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앞서 언급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april/ustr-releases-annual-special-301-report-intellectual-property-protection-and-review-notorious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중 간 지식재산 패권경쟁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전략",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래에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국 정부에서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시작된 이래 진행된 지식재산 관련 조치들과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된 진행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사항

2020년 1월 15일 미·중 양측 대표는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한 1단계 '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경제무역협정(이하 협정)'은 총 8개 챕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장에서는 양국의 지재권보호와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와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 챕터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 보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보호(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포함), 특허 존속기간 연장,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 불법복제 및 모조품 생산 및 수출 단속), 지리적 표시 보호,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지식재산 사건의 사법집행과 절차 및 양국협력과 협의의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영업비밀 보호

협정 1장 2절에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협정의 1.3~1.9의 내용에 해당된다. 협정은 이 소절의 제목을 "영업비밀과 상업비밀정보"로 명명하고 "미·중 양측이 '영업비밀 및 상업비밀정보'의 효율적 보호에 동의하며 '상업비밀정보'는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공개되면 정보보유자의 경쟁적 지위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전통적인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관련 법규인 《부정경쟁방지법》은 2019년 개정에서 영업비밀의 정의를 기존의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서 개정 후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는 상기 협정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후속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영업비밀보호에 대해 책임자 범위, 침해행위 범위, 증명책임 분배, 임시조치, 형사보호, 정부기관보호 등의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세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협정은 침해책임자의 범위(모든 자연인·조직·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와 침해행위의 범위(전자침입·법정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특정 금지 행위를 열거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019) 제9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증명책임 분배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부정

경쟁방지법 제32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어, 협정의 요구에 상응하게 영업비밀 권리자가 이미 초보적인 증거를 제시해 합리적으로 피고인을 지정할 경우,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협정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한다는 모든 주장을 "긴급상황"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이 구체적 사건 상황에 기초해 행위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지식재산권 분쟁 행위보전 사건심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제6조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형사집행의 요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219조와《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제7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죄의 입건 요건으로 "권리자에게 50만 위안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은 실제 손실을 영업비밀 침해 형사 수사 개시의 전제로 하는 것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 구성 요건에 대해 협정은 영업비밀 침해죄의 주관적 요건을 "고의"로 규정하고, 객관적 침해행위는 "전자침입", "전산시스템 무허가 또는 부당 사용" 등 형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기관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은 정부 기관이 반드시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승인 없이 영업비밀을 폭로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정에 규정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상당 부분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협정의 체결은 행위자의 범위, 입증책임 전환, 형사사건 입건 요건 완화 등으로 인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법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협정 1.10은 의약품 특허 데이터 보완에 관한 규정이다. 협정은 의약품 특허출원인이 특허 심사, 심판, 사법절차 중에 충분한 공개, 진보성(창조성) 등 특허성을 충족할 수 있는 보충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출원일 이후에 보충적으로 제출하는 실험데이터에 대하여 심사관은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심사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보충자료로 제출한 실험데이터가 증명하는 기술효과는 해당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특허출원의 공개된 내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출원인이 비교적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명이 미완성 상태에서 출원부터 한 후 실험데이터를 보충하여 출원일 후에 발명을 완성하여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개와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협정의 규정이 향후 중국의 행정, 사법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협정 1.11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다음의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특허권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타인이 특허 존속기간 내에 관련 제품의 출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통지한다. (2) 특허권자가 타인의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 한다. (3) 상기 구제는 사법 또는 행정의 신속한 구제이다. 예를 들어 행위보전 등 임시조치이다. (4)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 및 신속한 구제를 수립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관해서는 2017년 중국에서 발표한 규범 문서인 《심사평가·심사비준 개혁 심화 및 의약품, 의료 기기의 혁신 장려에 관한 의견》 제16조가 이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수립을 모색할 것을 제기하였고, 2019년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발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제4조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구축을 모색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된 특허법 제4차 개정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협정 1.12는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출시 전 허가를 위한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허가 절차로 인한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상은 "최대 5년 이하로 조정되며, 특허 총 존속기간은 중국에서 출시 승인일로부터 14년을 넘지 않는다." 의약품의 복잡한 허가제도가 실제 특허 보호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의약품 출시 후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감안하면, 이 협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중국의 의약품 특허 보호에 큰 변화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특허 존속기간 연장

협정 1장 4절에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정 1.12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하여 두 가지의 내용이 있고, 첫째 특허 심사과정의 불합리한 연장을 보상할 것, 둘째 의약품 출시 승인 과정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보상이며, 이는 각각 미국 특허법 154조 (b)와 156조의 규정에 대응된다.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에서는 일반적인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부여 과정에서 출원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기 불합리한 지연은 적어도 '중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내에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

협정 1장 5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와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규정하였고, 7절에 불법복제와 모조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단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각 협정의 1.13~1.14, 1.18~1.23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와 모조품 단속에 관하여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효율적인 통지 및 상품삭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둘째, 침해를 용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처벌이다. 통지 및 삭제제도는 주로 중국《전자상거래법》제42조~제44조에 규정되어 있다. 본 협정이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미칠 영향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지 오류로 플랫폼 내 경영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은 선의의 오류로 인한 상품삭제 통지에 대하여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권리자가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사법 기소 또는 행정 고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은 이를 20 업무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악의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협정은 악의적 이의제기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침해를 용인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즉 "모조품이나 불법복제 상품의 판매를 반복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하여 협정은 중국이 이에 대하여 인터넷 경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복제와 모조품의 생산과 수출에 관하여 협정은 가짜약, 건강과 안전 위협이 있는 가짜 상품, 국경조치, 실물시장 법집행 등의 관점에서 중국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을 요구하여 가짜와 불법복제 제품, 특히 공중위생과 개인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제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조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 부착한 표지만 제거한 가짜 제품이 유통채널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않되며,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 협정은 정부 및 정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기관 및 단체는 허가된 소프트웨어만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비정부측 제3자가 감사를 진행하여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협정 당시의 중국의 관련 법규, 즉《의약품관리법》,《상품품질법》,《상표법》,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형법》 등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일치하며, 다만 협정은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수량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집행 결과의 공개를 통한 이행의 담보를 세밀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지리적 표시 보호

협정 1장 6절에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협정 1.15~1.17에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협정은 중국의 지리적 표시 관련 국제협정 체결에 대한 제한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선상표와 통용명칭 사용에 대하여, 해당 국제협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타국이 국제협약에 열거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협정은 통용명칭의 인정기준에 관하여《최고인민법원 상표수권, 권리확정 행정사건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제7조 통용명칭 인정기준에 대한 규정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가 통용명칭이 된 경우에 대하여《국외지리표시제품보호방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용명칭으로 바뀐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철회신청 관련 사항도 협정의 요구사항과 부합한다.

셋째, 복합명칭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하여 협정은 복합명칭의 지리적 표시 보호가 해당 복합명칭의 통용명칭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복합명칭 지리적 표시에서 보호되지 않는 별도 구성 부분은 공개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6)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협정 1장 8절에는 악의적 상표등록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였고, 구체적으로 협정 1.24~1.25에서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한 줄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2019년 중국의 상표법 개정 및 후속 규정인《상표출원 등록행위 규범화 규정》을 제정하였다. 모두 악의적인 상표등록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며 상표사용의무 강화, 상표대리행위 규범,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대리기구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7) 지식재산권사건 사법집행 및 절차

협정 1장 9절에 지식재산권 사건의 사법집행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구체적으로 1.26~1.31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집행에서 형사집행으로의 이관, 억제목적 달성을 위한 처벌, 판결 집행,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행, 증거의 적법성(문서인증, 증인의 증언) 등 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의 사법 집행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억제목적 달성을 위한 처벌에 관하여, 미래의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사구제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판결 집행과 관련하여 협정은 중국이 본 협정 발효 후 1개월 내에 사업지침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신속한 판결 집행을 확보하고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행에 관하여 협정은 통상 서명자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권리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피소자가 반론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권리보유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피소자는 저작권과 관련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증거 합법성에 관하여, 협정은 민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인정이나 위증 처벌을 전제로 한 증인 증언의 도입을 통해, 진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 인증을 요구하는 형식적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당사자 간의 인정이나 위증 처벌을 전제로 한 증인 증언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중국은 반드시 공증과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해외증거가 중국 내에서 합법성 인정에 영향을 준다. 또한 당사자에게 사건에서 증인이나 전문가를 초청하고, 재판에서 증인 증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8) 양국 협력과 협의의 이행

협정 1장 10절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국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11절에는 1장의 협의 이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미·중 양측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의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데 동의하였고, 미국 특허상표청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년 단위 지식재산권 협력업무계획을 논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본 협정 발효 후 30 근무일 내에 중국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해당 실행계획은 제1장의 협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조치 및 적용 시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14.5. 규획 지식재산 관련 주요내용

2021년 3월 13일 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강요[3]》(이하 "규획강요")를 발표하였다. 규획강요는 총 19편 6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5장 5절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향후 5년간 지식재산 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최근 진행된 상표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 운용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 대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국의 행동지침이자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규획강요의 5가지 측면의 맥락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발전 장려

국가지식산권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특허, 상표담보대출 항목은 12,03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3.8%, 담보대출총액은 2,180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43.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발전은 이미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으며, 기업 융자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2019년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국가지식산권국, 국가판권국은《지식재산권 담보대출사업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4]》를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서비스 체계 최적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서비스 혁신 강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의 건전성,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보장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 요구하였다.

이번 규획강요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발전을 장려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을 나타내며 또한 지식재산권의 재산 속성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특히 금융기관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발전시킬 때 지식재산권 객체의 무형성, 지식재산권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 평가체계의 미성숙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금융의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베이징, 선전, 광저우, 상하이, 포산, 쑤저우, 옌타이 등 7개 도시는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자산유동화증권(ABS)상품을 승인 또는 발행하였으며, 2020년 선전거래소, 상하이거래소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ABS는 누적하여 15건이 접수되었으며, 합계 109억3200만 위안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런 모델은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화폐화를 가속화 할 것이나, 이에 상응하는 이론 연구, 감독기능이 산업발전에 비하여 뒤처져 있어 시급히 "14.5" 및 "2035" 기간 중에 단점을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정책적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4) "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质押融资工作的通知"

(2) 지식재산권 보호, 활용체계 정비

1) 지식재산 강국 전략을 실시하여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완비하며, 새로운 분야 또는 새로운 형식의 지식재산권 입법을 가속화 한다.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2021년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임무 목록[5]》에 따르면 2021년 지식재산 강국 전략과 "14.5" 규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와 행정집법을 강화하고, 중재, 조정, 공증, 권리보호 지원체계를 완비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완비하고, 손해배상 정도를 강화 한다.

3) 특허 지원 장려 정책과 평가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가치가 높은 특허를 더욱 보호·격려하며, 특허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한다. 고가치 발명특허란 "국가지식산권국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받고, ①존속기간 내에 있는 전략적 신흥분야의 특허, ②해외에 패밀리 특허권이 있는 특허, ③특허권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인 특허, ④타인에게 실시권을 허가하여 수익이 있거나 담보대출을 받은 특허, ⑤국가과학기술상을 수상하거나 중국특허상을 수상한 특허"를 의미한다.

4) 국유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권익 분배 체제를 개혁하고, 과학 연구기관과 대학교의 지식재산권 처분의 자주권을 확대한다.

5) 무형자산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와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리체제를 형성한다.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 등 문서에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제도를 만들고, 법에 따라 자산평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무형성을 감안할 때, 현재 자산평가를 위한 원가법, 시장법, 미래소득법 등은 아직 미성숙하고, 시장화가 낮고, 권리자의 수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4.5"와 "2035"시기에는 기업의 출자, 융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형자산 평가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한다.

6) 지식재산권 보호 활용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활용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의 지식재산권 담보등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활용거래의 유익한 탐색이며, "14.5" 및 "2035" 시기에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3) 오픈소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법률체계 완비

인터넷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거둔 후발 우위는 대규모의 사용자 및 사용자

5) "2021年推动知识产权高质量发展任务清单"

데이터에 기인하며, 기술응용 단계에서의 성취가 저변 기술 개발 능력을 습득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기반 소프트웨어에서의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오픈소스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 분쟁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독특한 재산권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식재산권 문제도 비교적 복잡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오픈소스 지식재산권과 법률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라 지식재산권 위험에 직면할 때,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의견

2019년 11월 23일 미중 무역분쟁이 중에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6]을 발표하였다. 의견 내용 중 향후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총론

2022년까지 침해가 용이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은 효과적으로 억제되어야 하고,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증거제시의 어려움, 장시간, 고비용, 저배상"의 국면을 명확히 개선하여야 한다. 2025년까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제고하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보호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보호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비지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데 있어 지식재산제도의 기본 보장 작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2) 제도적 제약을 강화하고, 지재권의 엄격한 보호정책 방향 수립

1)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의 기초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개선을 가속화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완비한다. 특허 및 저작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가속화한다.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액의 상한을 대폭 높이고, 손해배상의 강도를 높인다. 민사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불법 소득 몰수 및 권리 침해 위조상품 폐기 등 행정처벌이 강화되고, 핵심 분야, 핵심 영역, 핵심 부분 및 중점 단체에 대한 특별행정집행 조치를 시작한다. 악의적인 상표등록,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및 악의적 소송 등 행위를 규제하고, 영업비밀, 상업정보 및 소스코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강화방안을 모색한다. 형사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 및 사법 해석의 수정 및 개선을 진행한다. 형사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침해의 입건기준을 낮추고 양형처벌을 높이며, 범죄진술 수정 및 침해물품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위조 범죄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위조 방지 정보지도, 상시적인 전문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강한 압작으로 단속태세를 유지한다.

2) 증거기준을 엄격히 규범화한다. 지식재산권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삼합일"재판제도

6) "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제도를 개선하고 재판 기준을 통일한다. 행정 집법과정에서 상표,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3) 사건 집행 조치를 강화하다. 지식재산권 분쟁조정협의 사법확인 매커니즘을 완비한다. 시장주체의 신용정보파일에 "블랙 리스트"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주체의 신용분류감독을 실시하며, 반복침해 및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불량에 대한 징계시스템을 완비한다. 모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도적인 사건과 중대 사건에 대한 공개심리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타지에서 사건의 집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통일되고 공평한 법치 환경 형성을 추진한다.

4)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개선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와 새로운 분야의 발전 현황에 대해, 특허·상표·저작권·식물 신품종과 집적회로배치설계 등의 보호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의약품 특허기간 보상제도 구축을 탐색한다.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보호관리기준 제정에 대하여 연구한다.

(3) 협업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보호 추진

1) 권리 확보, 유지를 위한 연결 프로세스 최적화한다. 특허, 상표, 식물 신품종 등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 주기를 더욱 단축한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심사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소스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특허 및 상표의 권리확정을 위한 원격심리, 행정확권 원격심리, 중대한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집법사건의 처리에 있어 타지방심리제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행정적 권리확정, 공증 증거물 기탁, 중재, 조정, 행정법 집행, 사법보호 사이의 연결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정보 소통과 공유를 강화하며, 각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강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매커니즘을 형성하여 권리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부서 간, 지역간 사건처리 협업을 강화한다. 부서 간 안건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부서 간 중대 안건 공동조사와 이관 체제를 완비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와 공안 부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건 조사 처리 업무의 연결 체제를 완비한다.

3) 간단한 사건 및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다. 중점 관심시장 리스트를 만들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시회, 전문시장, 수출입 등의 핵심 영역과 분야에 대하여 행정법 집행, 중재, 조정 등의 신속한 처리 채널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침해 고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종 사이트의 규범적 관리, 침해 내용 삭제, 불법복제 사이트의 접속 차단, 침해 정보의 전파 중지, 저작권 소송을 이용한 투기성 이익에 대한 단속 등을 지도한다.

(4) 기초조건 건설을 강화하여, 지재권 보호업무에 대한 지지 강화

1) 기초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다. 전국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센터와 보호 모니터링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등록, 심사 공고, 분쟁 처리, 중요 사건 등의 정보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법집행 정보보고를 위한 전반적인 조정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보통합을 높이며, 종합적인 연구 판단과 거시적인 의사 결정 수준을 높인다. 권리유지 지원, 민원 신고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능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2)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다. 지방, 부문, 교육기관, 산업협회, 학회가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재 배양을 위한 교육 강도를 높이도록 장려한다. 에 대한 교육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한다. 지식재산권 행정법 집행과 사법 인력 배치와 전문화를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과 법조인의 적극성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인적자원의 안정과 질서 있는 교류를 확보한다.

02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제2장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을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하여 왔다.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강력한 특허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중국 특허법의 권리 보호상의 문제점으로 권리 보호를 위한 입증이 어렵고 비용은 높은 반면, 손해배상액 및 과태료가 낮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산권 보호 강화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은 이미 2011년 11월《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에 관한 의견》에서 제안되었으며, 이 의견에 따라 2012년 입법업무계획에서 처음으로 개정에 대한 연구계획이 포함되었다. 이후 개정초안 마련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5일에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특허법 개정안(초안)》이 통과되어 큰 틀에서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미국측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7)]

(1) 특허권 보호 강화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손해배상제도 강화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법정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종전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하한을 "10만 위안 이상"으로 제시되었으나,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가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소송에도 적용되는 중국 특허법의 특성상 법정손해배상의 하한선을 둘 경우 오히려 불합리한 법정 손해배상액 책정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비례성을

7) 신구대조표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번역문 참고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한액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3만 위안 이상"으로 하한선이 변경되었다.

배상액 확정을 위한 권리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였다.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출 명령에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제65조(구법)	제71조(신법)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② 권리자의 손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 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② 권리자의 손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③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인민법원은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 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장부 ·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2) 행정집행 강화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담당부서를 "특허 법집행 부서"로 명시하고, 과태료의 범위를 종전 위법소득의 "4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을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서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로 확대하고 과태료 상한을 "20만 위안"에서 "25만 위안"으로 확대하였다.

제63조(구법)	제68조(신법)
특허위조의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4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허위조의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허침해 관련 행정집행 권한을 "특허업무관리 부서"에서 "특허법집행 부서"로 확대하였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지방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도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처리권한을 부여하였다.

제64조(구법)	제69조(신법)
①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때에는, 관련 당사자 심문,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협력해야 하고, 거절·방해해서는 안 된다.	①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때에는, 아래 열거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 관련 당사자 심문,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2) 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4)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 (5) 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②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자 또는 이해

제64조(구법)	제69조(신법)
	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전항의 제1, 2, 4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 2개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협력해야 하고, 거절·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사건의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집행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특허권자 또는 특허침해 관련 행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법)	제70조(신법)
	제70조 (신설)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병합처리를 할 수 있다; 지역경계를 넘어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3)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8] 도입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약 출시허가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되,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이 1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의 정비 및 심사·심판 실무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의약품 발명의 경우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며 이 같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함

제42조(구법)	제42조(신법)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③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한다.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 심사청구일로부터 만 3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한 경우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제42조(구법)	제42조(신법)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①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명특허의 권리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하나,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5)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신설, 소송시효 연장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법)	제20조(신법)
	제20조 (신설) ①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원칙을

(구법)	제20조(신법)
	준수해야 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②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

특허권 침해 소송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를 안 날"에서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로 수정하여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제68조(구법)	제74조(신법)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고,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나,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 수여일부터 계산한다.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3년이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3년이고,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하나,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계산한다.

(2) 특허 등록제도 정비

1) 디자인 보호제도 강화

종전 전체 디자인으로만 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부분디자인제도를 신설하여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2조(구법)	제2조(신법)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제2조(구법)	제2조(신법)
④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④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디자인에 대하여 국내우선권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9조(구법)	제29조(신법)
① (생략)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중국에 제1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은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제1차 출원한 날로부터 16개월로, 디자인 출원의 경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제30조(구법)	제30조(신법)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출원인이 발명·실용신안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6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디자인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추가

종전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원자핵변환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제25조(구법)	제25조(신법)
①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물의 모양·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설계 ② 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 및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물의 모양·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설계 ② 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3) 신규성 상실 예외인정 항목 추가

전염병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상태 발생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추가하였다. 다만,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은 여전히 매우 엄격하여 해외 출원인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제24조(구법)	제24조(신법)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 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시, 공공 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우 (2)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 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제24조(구법)	제24조(신법)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3)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4)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

(3) 특허권 실시 및 활용 촉진

1) 직무발명의 처분 관련 규정 마련

해당 단위의 물리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귀속되며, 해당 단위는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해당 발명창조의 실시와 활용을 촉진한다고 하여, 구법과 비교하여 직무발명창조의 처분, 활용 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처분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배분에 대한 내용은 최종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6조(구법)	제6조(신법)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 ~ ③ (생략)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해당 단위는 그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2) 특허개방허가 제도 신설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면형식으로 누구에게나 해당 특허의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성명을 제출하고, 사용료 지불방식, 지불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하여 개방허가를 시행하게 하여 특허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실시허가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며, 허가의 종류는 보통허가에 한하며, 독점 또는 전용허가를 할 수는 없다.

(구법)	제50조~52조(신법)
	제50조 (신설) ① 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게든지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제출하고, 허가사용료 지불방식·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고, 개방허가를 시행한다. 실용신안, 디자인특허에 대한 개방허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권자가 개방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개방허가 성명이 공고로 철회되는 경우, 이전에 부여된 개방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1조 (신설) ① 어떤 단위나 개인이 개방허가된 특허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된 허가사용료 지불 방식·기준에 따라 허가사용료를 지불한 후에, 특허실시허가를 획득한다. ② 개방허가 실시기간,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연차등록료에 대하여 상응하게 감면한다. ③ 개방허가를 실시하는 특허권자는 피허가자와 허가사용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후에 보통허가를 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대해 독점 또는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52조 (신설) 당사자는 개방허가 실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의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의 진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나 특허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1)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권리수여·권리확인 행정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1)[9]》제정

특허의 권리수여, 권리확인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8월 24일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권리수여·권리확인 행정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1)》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 복심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며, 우리나라의 관련 용어에 적용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1) 권리범위 해석 관련

제2조 인민법원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청구범위, 명세서 및 첨부 도면을 보고 이해되는 통상의 의미로, 청구범위의 용어를 확정한다. 청구범위의 용어는 명세서 및 첨부 도면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거나 설명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정한다.

전항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통상 이용하는 기술사전, 기술 매뉴얼, 참고서, 교과서, 국가 또는 업계 기술 표준 등을 결합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3조 인민법원은 특허 권리확인 행정사건에서 청구범위의 용어를 확정할 때, 특허침해 민사사건의 효력이 발생된 재판에서 채택된 특허권자의 관련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조 청구범위, 명세서 및 첨부 도면에서의 문법, 문자, 숫자, 문장부호, 도형, 기호 등에 명백한 오류 또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청구범위, 명세서 및 첨부 도면을 보고, 유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유일하게 이해되는 것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6조 명세서에 특정 기술 내용이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아, 특허 출원일에 아래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초래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명세서 및 해당 특정 기술 내용과 관련된 **청구범위가 특허법 제26조 제3항[10]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9)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授权确权行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一）"

10)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3항** 명세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고,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① 청구범위가 한정하는 기술방안이 실시 불가능한 경우
② 청구범위가 한정하는 기술방안을 실시해도 발명 혹은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③ 청구범위가 한정하는 기술방안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과도한 노력이 필요할 경우

제7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명세서 및 첨부 도면에 근거하여, 청구범위에 아래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청구범위가 특허법 제26조 제4항[11]의 "특허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① 한정된 발명의 주제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② 청구범위의 기술특징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③ 기술 특징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

제22조 특허법 제23조 제3항[12]의 "합법적인 권리"에는, 작품, 상표, 지리적 표시, 성명, 기업명칭, 초상 및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 향유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 혹은 권익이 포함된다.

2) 심리 관련

제10조 의약품 특허 출원인이 출원일 이후에 보충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고, 해당 데이터에 의존하여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2조 제3항[13], 제26조 제3항[14] 등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심사해야 한다.

제11조 당사자가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실험 데이터를 제출한 상대 당사자는 실험 데이터의 출처와 형성 과정을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실험 책임자에게 법정에 나와, 실험 원료, 절차, 조건, 환경 혹은 파라미터 및 실험을 완성한 인원, 기관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 특허 출원인, 특허권자가 특허 권리수여·권리확인 행정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여, 특허출원이 거절되지 않아야 한다거나 특허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11)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4항**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해야 하고, 명확·간단명료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12) 중국 특허법 제23조 제3항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13) **중국 특허법 제22조 제3항** 진보성(创造性의 번역)이란,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4) 청구범위 해석 관련, 제6조 주석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3항 참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30조 무효심판 청구인이 특허 권리확인 행정사건에서 제공한 새로운 증거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나, 아래 열거된 증거는 제외된다.

① 특허 무효심판 청구 심사과정 중에서 이미 주장된 공지 상식 혹은 일반적인 디자인을 증명하는 경우
②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 혹은 일반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을 증명하는 경우
③ 외관디자인특허 제품의 디자인 공간 혹은 기존 디자인의 전체적 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④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 심사과정 중에서 이미 채택된 증거의 증명 능력을 보강하는 경우
⑤ 기타 당사자가 소송 중에 제공한 증거를 반박하는 경우.

3)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등

제14조 인민법원이 외관디자인 제품의 일반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을 인정할 때, 출원일에 외관디자인특허 제품의 디자인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 디자인 공간이 비교적 큰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소비자가 통상 서로 다른 디자인 사이에 비교적 작은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디자인 공간이 비교적 작은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소비자가 서로 다른 디자인의 비교적 작은 차이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된 디자인 공간에 대해 인정할 때, 인민법원은 아래 열거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① 제품의 기능, 용도
② 기존 디자인의 전체 상황
③ 일반적인 디자인
④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
⑤ 국가, 업계 기술 기준
⑥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타 요소.

제16조 인민법원에서 외관디자인이 특허법 제23조[15]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인정할 때, 외관디자인의 전체 시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5) **중국 특허법 제23조** ① 특허권이 수여되는 외관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동일한 외관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② 특허권이 수여되는 외관디자인은 기존 디자인 또는 기존 디자인 특징의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③ 특허권이 수여되는 외관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④ 이 법의 기존 디자인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말한다.

특정 기술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거나 혹은 단지 제한적으로 선택되는 디자인 특징은, 외관디자인특허의 시각 효과에 대한 전체 관찰과 종합적 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

제17조 인민법원은 외관디자인 제품의 용도에 근거하여, 제품 종류가 동일 혹은 유사한지 여부를 인정해야 한다. 제품의 용도를 확정할 때, 외관디자인의 요약, 외관디자인 제품의 분류표, 제품의 기능 및 제품 판매, 실제 사용의 상황 등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제22조 특허법 제23조 제3항의 "합법적인 권리"에는, "작품, 상표, 지리적 표시, 성명, 기업명칭, 초상 및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 향유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 또는 권익"이 포함된다.

(2)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16]》주요개정 사항

1) 인민법원에 수리된 발명특허 침해사건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유지하는 실용신안·디자인특허를 침해한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답변기간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23조 제3항의 합법적 권리는 "작품, 상표, 지리적 표시, 성명, 기업명칭, 초상 및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 향유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 혹은 권익"이 포함된다.

3) 특허권 침해소송의 소송시효는 3년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침해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권리자가 3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가 기소 시에 계속되고 있고, 해당 특허권이 존속기간 내에 있다면, 인민법원은 피고가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판결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날로부터 3년을 추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최고인민법원의 특허침해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2)[17]》주요개정 사항

1)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주장한 청구항이 국무원 특허행정부분에서 무효로 선고될

1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17)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

경우,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무효청구항에 기초하여 제기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상기 청구항에 대한 무효가 확정된 행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을 증거로 증명하면, 권리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시효는 전항의 행정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특허가 분할출원 관계의 기타 특허 및 그 특허의 심사기록물, 확정된 특허수여·확정재판문서를 해당 사건 특허의 청구항을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 관련 상품이 특허실시용 재료·설비·부품·중간재 등에 사용되는 전용상품인 것을 명백히 알고,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타인이 특허침해행위를 하는데 제공하는 경우, 권리자가 해당 제공자는 민법 제1169조의 타인의 침해행위 방조에 해당함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관련 상품, 방법에 특허권이 부여된 것을 알고도,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생산경영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 침해를 유도한 경우, 권리자가 해당 유도자의 행위가 민법 제1169조의 타인의 권리 침해를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 특허출원 보조금 제도 폐지 등 정책변화

(1) 특허출원비용지원 전면 취소[18)]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1. 1. 27. “특허출원행위의 더욱 엄격한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1년 6월 말까지 각급 특허 출원 단계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으며, 해당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지방정부는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 지원, 장려, 보조금 등의 어떠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할 수 없으며, 현행 지방의 자금지원은 등록 발명특허(PCT 및 기타 경로로 해외에서 등록된 발명특허 포함)에 한정하고, 지원방식은 등록 후 지원으로 하였다. 지원 대상자가 받는 지원금 총액은 특허권 취득시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차료, 대리비용 등 중개서비스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2) 허위로 특허출원 지원금을 수령한자는 기한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14.5 규획” 기간내에 각 지방은 특허등록에 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점차 감소하여 2025년가지 전면 취소하여야 한다. 각 지방은 특허 지원 관련 재정 자금의 사용관리를 최적화하고, 특허 보호 운용을 강화하고, 특허 활용, 행정보호 및 공공서비스 강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3) 높은 수준의 발전요구를 엄격히 실행하고, 특허출원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며, 특허출원 품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① 업무목표 명확화
지원 및 장려 등의 정책을 추가로 완비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지원을 전면 폐지하고, 특허활용, 행정보호,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특허출원 질서를 철저히 규율하고, 혁신활동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지식재산권 사업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

② 업무 중점 파악
아래와 같은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정상 특허출원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 및 정책규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리한다.

(a)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국가지식재산국 제75호 국령) 제3조 규정의 6가지 상황

18)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발표 “关于进一步严格规范专利申请行为的通知”, 2021.1.27

(b) 단위 또는 개인의 관련 특허출원을 고의적으로 분산 출원하는 행위
(c) 단위 또는 개인의 연구개발 능력과 명백히 부합되지 않는 특허출원
(d) 단위 또는 개인의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전매(투기)하는 행위
(e) 단위 또는 개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에 복잡한 구조를 통한 간단한 기능 실현, 기술 상식이나 간단한 특징을 조합 또는 중첩하는 등의 기술 방안이 존재하여 기술 개량의 상식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는 행위
(f) 기타 민법전 규정의 성실신용원칙을 위반,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특허출원의 관리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이상의 "단위 및 개인"에는 동일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및 실질 통제인이 포함된다.

③ 업무조치 강화

비정상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 및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엄격한 처리를 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출원인에게 특허비용을 감면하지 않는다. 이미 감면하여 납부한 것은 감면한 비용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사안이 중할 경우 올해부터 5년 이내에 특허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국가지식재산권국 정부 홈페이지 및 《중국지식재산보》에 발표한다. (3) 특허출원 건수 통계에서 해당 출원 건수를 제외한다. (4) 국가지식재산권 시범 및 우위 기업,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등록기업 자격 및 중국특허상 신청, 참가 도는 수상자격을 취소한다. (5)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는 출원인과 해당 대리기구에 대하여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이미 지원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사안이 중할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각급 지방 지식재산 부서는 이러한 출원을 대리하여 특허업무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특허대리기구에 대하여 확인되는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 처리 강도를 높인다.

④ 협동 관리 강화

특허출원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평가지표를 설치할수 없으며, 지방·기업·대리기관 등에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특허출원량을 할당할 수 없다. 특허출원 건수(PCT 출원 포함)는 서로 비교해서는 안된다.

특허 지원 정책을 조정하다. 2021년 6월 말까지 각급 특허 신청 단계의 원조를 전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기술혁신과 실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 양도행위를 단호하게 억제하여야 한다. 거래처와 거래처 배경 검증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신청이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세탁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는 것이다. 국가지식재산국은 특허 양도·허가 등 등록 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지방과 함께 비정상적인 특허 운영 행위를 신속하게 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특허출원규범화에 관한 방법[1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1. 3. 1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전면적인 특허품질 제고, 특허법 개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방법》을 발표하였다. 그간 출원량 확대정책으로 특허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특허품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출원량 위주의 정량적 평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규제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정상 특허출원행위의 개념(방법 제2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 발명창조 활동에 기초하지 않으며, 부정당한 이익이나 허구의 혁신 성과, 서비스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단독 또는 결탁하여 각종 특허출원을 제출, 특허출원을 대리,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비정상 특허출원행위의 유형(방법 제2조)

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된 발명창조 내용이 명백하게 같거나,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발명창조의 특징이나 요소의 간단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다수의 특허출원인 경우

② 제출된 특허출원에 발명창조의 내용, 실험 데이터 또는 기술 효과가 조작, 위조, 변조되었거나, 선행 기술 또는 선행 디자인 등을 표절한 것, 간단히 치환한 것, 주합한 것 등과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③ 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가 출원인, 발명자의 실제 연구개발 능력 및 자원 조건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 내용이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타 기술을 이용하여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⑤ 제출된 특허출원의 발명창조가 특허 가능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명백하게 기술 발전이나 디자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거나, 실제적 보호가치가 없는 열악하게 만든 것, 나열된 것, 불필요하게 보호 범위가 축소된 것이거나, 검색과 심사 의의가 없는 내용인 경우

1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발표 "国家知识产权局发布《关于规范申请专利行为的办法》的公告 (第411号), 2021.3.11. 원문 및 번역문은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⑥ 비정상 특허출원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특정 단위, 개인 또는 주소가 관련된 다수의 특허출원으로 분산, 순차적 또는 다른 지역에서 제출되는 경우

⑦ 특허기술·디자인 또는 기타 정당한 목적이 아닌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거래이거나, 발명자, 창작자를 허위로 변경되는 경우

⑧ 특허 대리기관, 특허변리사[20] 또는 기타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을 대리, 유도, 교사, 협조 또는 그와 공모하여 각종 비정상 특허출원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⑨ 성실신용원칙의 위반, 정상적 특허업무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타 비정상 특허출원행위 및 관련 행위

3) 비정상 특허출원에 대한 처리(제3조)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신고에 의하여 알게되고, 본 방법에서의 비정상적 특허출원행위가 존재한다고 일차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심사조직을 구성하거나 심사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전문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일괄적으로 집중처리하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해당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해당 특허출원 등의 청구를 자진철회 또는 의견진술할 수 있다.

4) 비정상 특허출원행위에 대한 조치(제4조, 제5조)

비정상 특허출원으로 인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특허비용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감면된 경우, 감면된 비용의 추가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누범 등 상황이 엄중한 출원인에 대하여, 비정상 특허출원행위가 인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비용 감면을 하지 않는다.

제2조 제8항에 기재된 비정상 특허출원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허대리기구 또는 특허변리사에 대하여 중화전국특허변리사협회[21]는 자율조치를 취하고, 누범 등 상황이 엄중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국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20) 특허변리사는 전리대리사(专利代理师)의 번역으로, 중국에서는 특허분야에만 대리인 자격제도 존재

21) 中华全国专利代理师协会, 우리나라의 변리사회에 상당하는 조직

03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제3장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가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22)]

2019. 4. 23.에 개정되어 2019. 11. 1.부터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 제4차 개정은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한 대응과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내용 중 상표와 관련해서는 제1장 8절에서 규정한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가 가장 관련성이 높으며, 제1장 5절의 "불법복제품 및 모조품 단속"이 해당될 수 있다. 이하에서 상표법 개정은 1단계 무역합의 이전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 8월 30일에 중국 상표법 3차 개정이 있은 후 비교적 짧은 주기로 4차 개정을 진행한 점과, 4차 개정에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점으로 볼 때, 중국 내부에서도 악의적 상표등록과 모조품 단속에 대하여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사용목적이 없는 악의적 상표출원은 거절

출원인이 사용목적 없이 상표를 사재기하는 경우 종전 최고인민법원 판례를 통하여 무효사유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경우 상표법 제4조 1항의 해석 상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활동의 수요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생산경영활동의 수요에 기초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대량의 상표를 사재기 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상표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공공자원을 부당하게 점용하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므로, 상표법 제44조 제1항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악의적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표사용을 촉진하고 상표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22) 신구대조표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번역문 참고

제4조(구법)	제4조(신법)
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② 본 법의 상품상표와 관련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된다.	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은 거절해야 한다. ② 본 법의 상품상표와 관련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된다.

(2) 상표대리기구의 책임 강화

악의적 상표출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표대리기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특허변리사 제도와 달리 한때 상표대리인 제도를 일시적으로 두었으나, 현재는 국가지식산권국으로부터 상표대리기구비준을 받으면 상표출원대리업무에 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상표대리기구가 제4조의 악의적 상표출원임을 알면서도 출원을 대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19조(구법)	제19조(신법)
① 상표대리기관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 ②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에 본 법이 규정하는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③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가 본 법 제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다.	① 상표대리기관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 ②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에 본 법이 규정하는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③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다.

상표대리기구가 제4조,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위반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경고와 함께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8조(구법)	제68조(신법)
① 상표대리기관 행위가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 (2) (생략) (3) 본 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대리기관가 전 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① 상표대리기관 행위가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 (2) 생략 (3) 본 법 제4조, 제1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경위에 근거하여 경고, 벌금부과 등 행정처벌 한다. 악의적 상표소송 제기에 대해서,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3)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청구대상 확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초심공고[23]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제4조를 추가하였다. 심사단계에서 악의적 상표출원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되지 않고 초심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선(先)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구법)	제33조(신법)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先)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임의인이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先)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임의인이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23) 등록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심사결과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초보심사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며, 우리나라 상표법 상 출원공고제도에 준한다. 초심공고기간은 3개월이다.

또한, 기등록된 상표가 제4조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누구든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구법)	제42조(신법)
① 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① 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④ 생략

(4)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배상액 및 법정손해액 상향 조정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와 침해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1배에서 최대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3차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번 4차 개정에서 종전 '3배 이하'에서'5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법정손해배액의 상한을 종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표침해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상표전용권 침해상품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도구에 대해서 소각 명령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63조(구법)	제63조(신법)
①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허가권의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전용권의 침해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술한	①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허가권의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전용권의 침해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술한

제63조(구법)	제63조(신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3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② (생략) ③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손해,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사용허가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행위의 경중을 근거로 3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② (생략) ③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손해,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사용허가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행위의 경중을 근거로 5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④ 인민법원이 상표분쟁사건을 심리하여, 권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가짜 등록상표 상품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소각을 명령한다. 가짜 등록상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주요한 재료, 도구에 대해서, 소각을 명령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전술한 재료, 도구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⑤ 가짜 등록상표 상품은 가짜 등록상표를 제거해도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다.

나 상표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1) 《최고인민법원의 상표사건 관련 관할 심리 및 법률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의 해석[24]》 개정

4차 상표법 개정에 따라 상표사건의 심리에 있어 신법과 구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조 본 해석의 별도 규정 외에, 상표법 개정 전에 발생하여 개정 후 상표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10조 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관련 상황에 대하여, 국가지식산권국이 상표법 개정 시행 후에 처리한 복심결정 또는 재정에 당사자가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개정 후의 상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기타 상황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상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2)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민사분쟁사건 적용법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25]》개정

상표법 제57조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사례 중 제7호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등록 저명상표를 침해한 경우 민사책임을 부과, 관련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하여 규정하여 미등록 저명상표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였다. 상표침해소송의 소송시효를 3년으로 하고 시효 계산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제1조 아래 행위는 상표법 제57조 제7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기업의 상호로 눈에 띄게 사용하여 관련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2) 타인의 등록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하거나 주요 부분을 다르거나 비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고,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3)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네임으로 관련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진행하여 관련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

---

24)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案件有关管辖和法律适用范围问题的解释"

25)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조 상표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 미등록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 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침해를 중지해야 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표법제13조, 제57조 관련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의 실시행위지, 침해사품의 저장지 또는 압류지, 피고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8조 상표전용권 침해소송의 소송시효는 3년이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침해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3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침해행위가 기소 시에 계속되고 있고, 해당 상표전용권이 존속기간 내에 있다면, 인민법원은 피고가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판결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날로부터 3년을 추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 악의적 무단선점행위 단속 등 정책 변화

(1) 《상표악의적 선점행위 단속 전문 행동 방안[26]》

중국정부는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회의를 통하여 상표에 대한 악의적인 등록행위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상표에 대한 악의적인 선점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전반적으로 정확한 상표등록 인식을 확립하여 안정적인 상표출원 수량과 품질 제고를 촉진하며, 우수한 혁신환경과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중점

특별단속은 다음과 같이 악의적인 상표등록, 부당이익 모도, 상표등록 관리질서 교란,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① 국가 또는 지역의 전략, 중대한 활동, 중대한 정책, 중대한 프로젝트,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명칭을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② 중대한 자연재해, 중대사고 재난, 중대한 공공위생사건과 사회안전 사건 등 돌발적인 공공사건과 관련된 단어, 로고를 악의적으로 등록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

③ 인지도가 높은 큰 대회, 중대한 전시회의 명칭, 로고를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④ 행정구역명칭, 山川명칭, 관광지명, 건물명칭 등 공공자원을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⑤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용명칭, 업계 용어 등 공공 상업 자원을 악의로 등록한 경우

⑥ 인지도가 높은 公人의 이름, 유명 작품 또는 캐릭터 이름을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⑦ 타인의 인지도가 높거나 식별력이 강한 상표 또는 기타 상업용 표지를 악의로 등록하여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준 경우

⑧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의 금지사항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종교·민족 등 사회공익과 공공질서에 대하여 중대한 소극적·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26) "打击商标恶意抢注行为专项行动方案"

⑨ 상표대리기구가 위탁자의 상기 행위를 알거나 당연히 알 수 있으나,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⑩ 기타 명백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2) 조치 사항

① 단서 파악 강화: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이 참여하는 국가 중대 정책의 실현, 담당하는 국가 중대 프로젝트, 존재하는 중대 돌발 공공사건, 주관하는 중대 교류 행사 등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의 중점을 확정하고 업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악의적인 등록사건의 단서자료는 충분히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악의적인 등록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의 단서자료는 완벽하여야 한다.

② 정확한 단속 : 상표등록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단속을 실시한다. 악의적인 상표등록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표심사, 이의신청, 평심[27] 및 후속 업무의 시너지를 실현하며, 집행기준을 표준화한다.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 절차 중에 있는 사건의 단서에 대하여 악의적 상표등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리, 병합심리와 중대사건 구두심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거나 무효를 선고한다.

③ 부문 간 협력 강화: 상표등록절차 내의 규제수단과 상표등록절차 외의 행정처분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행위를 전면적으로 엄단하기 위해 힘을 합치며,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행위를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④ 종합 시책 강화: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정보를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전국 공공신용정보 목록에 포함시켜 신용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추진한다. 상표대리기구의 악의적 상표등록행위에 대하여 단속강도를 높이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각 지역은 법에 의하여 상표대리업무 수리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상표출원건수를 부서 업무평가의 주요 자료로 삼는 것을 근절하고, 상표출원 건수를 비교하거나 보조금, 장려금 등 어떠한 형태로도 상표등록출원 행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3) 일정

2021년 4월~10월 중에 상표국에서 각 지방상표심사협력센터의 심사업무를 지도하며,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절차 중의 사건단서에 대하여 상표국이 법에 따라 심사하여 일부 전형적인 상표를 선별하여 무효선고를 한다. 2021년 11월~12월에 특별단속 전개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27) 평심업무는 상표거절결정과 3년연속불사용취소신청에 대한 복심사건과 상표무효심판사건을 포함한다.

(2)《상표출원등록행위의 규범화에 대한 규정[28]》

상표출원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규제하고, 상표등록 관리질서를 확립하여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및《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1) 상표출원 관련 주요 내용

상표출원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및 부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상표출원은 신의칙에 따라야 하며,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① 상표법 제4조에 규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

② 상표법 제13조에 규정한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는 행위

③ 상표법 제15조에 규정한 대리인, 대표자가 허가 없이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계약, 업무상 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명확히 알면서 상표출원을 하는 행위

④ 상표법 제32조에 규정한 타인이 먼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신의칙 위반, 공서양속 위배 또는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행위

2) 상표대리기구 관련 주요 내용

상표대리기구는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원인의 상표출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위탁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① 상표법 제4조에 규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인 경우

② 상표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 상표법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구는 상표출원 대리서비스를 하는 외에, 기타 상표를 출원해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에 관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아야 한다.

---

28)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17号)

3) 상표등록부서 관련 주요 내용

상표등록부서는 상표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출원은 법에 의하여 거절하여야 하고 초심공고하지 않는다.

초심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에 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상표등록부서는 심사를 거쳐 이의사유가 성립되면 등록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거절불복심판과 부등록복심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부서는 심리를 거쳐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거절 또는 부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에 대하여 본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등록상표 무효선고신청이 제출된 경우, 상표등록부서가 심사 후 무효사유가 성립하면 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선고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부서는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발견하면 반드시 상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부서는 상표출원이 상표법 제4조의 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① 출원인 또는 그와 관련있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의 출원상표 건수, 지정 상품류, 상표거래 현황 등

② 출원인의 종사하는 업종, 경영상황 등

③ 출원인이 이미 효력이 있는 행정결정 또는 재정, 사법판결에서 상표 악의적 선점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행위로 인정된 상황 등

④ 출원상표와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가 있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⑤ 출원상표와 유명인의 성명, 기업명칭, 기업명칭 약자 도는 기타 상업표지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⑥ 상표등록부서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기타 요소

상표양도는 상표등록부서가 본 규정 제3조 위반여부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상표등록부서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상표등록부서는 수리 후 상표권자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에 대한 취소신청 제기 전에 사용한 사용증거 또는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에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거자료가 무효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부서는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3)《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29]》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재권 침해 위조품 폐기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상표법 제6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내용 일부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1) 총체적 요구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는, 법에 따른 처리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무해화 처리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폐기 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노천 소각, 단순 매립, 임의 적재 또는 도시 하수관 방류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재유통 근절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위조 상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해당 상품의 상업적 유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관 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 또는 불법복제품의 수출입 또는 기타 해관 절차에 진입하는 것을 허가할 재량권이 없다.

2) 폐기범위

현급 이상(현급 포함) 행정 법집행, 사법 사건처리 기관(이하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몰수한 권리침해 위조품 및 위조품 또는 불법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 도구, 표시표지, 라벨, 증서, 포장물 등에 대해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해야 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며 권리침해 위조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시,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 등록상표 위조품, 등록상표 표시 또는 권리침해 복제품의 제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 기구, 금형 등 도구, 및 기타 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권리침해 위조품

29) "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 2020.8.13.. 번역문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참고

3) 폐기시한

①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직권에 따라 즉시 권리침해 위조품의 폐기 처분 의견을 제출한다. 쉽게 부패, 변질되는 등 보관하기 어려운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에 대해서, 사진 촬영 또는 녹화 등 방법으로 증거를 확정한 후에,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행정·형사사건 심결 전에 폐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권리침해 위조품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건에서, 행정처분 결정서 송달 후에,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의가 신청되지 않고, 행정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동의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의 신청을 하고, 행정 재심의 기관이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의 처분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행정 재심의 결정서가 송달된 후에,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에 재결 신청도 제기되지 않은 경우, 행정 재심의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의 처리의견을 제기해야 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동의 후 폐기해야 한다.

④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이 내린 행정소송의 판결·재정서의 효력이 발생된 날부터,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동의 후 폐기해야 한다.

⑤ 지재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재판기관은 유죄로 판결한 경우,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 사항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품과 권리침해 위조품 제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와 기구, 금형 등 도구를 폐기해야 한다. 무죄, 사건 불기소 결정 또는 사건 취소가 판결되었으나, 행정위법을 구성하는 경우, 사건 관련 권리침해 위조물품을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으로 이송하고, 행정 법집행 사건처리 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⑥ 민사·행정 사건의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신청을 거쳐, 민사·행정 사건의 종결 후 또는 샘플링, 사진 촬영 등 방식으로 증거를 고정시킨 후 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4) 폐기과정 감독

① 권리침해 위조품을 처분하기 전에,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처분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심사허가서를 작성하며, 처분 의견을 제출하고,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얻은 이후 환경 무해화 처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또는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생산, 가공·이용 기업에 위탁하여 분류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은, 처분작업에 앞서 위탁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에 작업 시작 시간, 장소를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작업이 완료된 이후, 즉시 관련 처분 상황을 서면으로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에 보고하고, 보고에는 처분 시간, 장소, 방식 및 폐기품 명칭, 모델 번호, 규격, 수량, 중량, 특징 등을 명기하며, 사진,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③ 행정 법집행·사법 사건처리 기관은 권리침해 위조품의 폐기 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권리침해 위조품의 처분 시에, 두 명 이상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록을 하며, 처분 시간, 장소, 방식을 기록하고, 처분 상품의 명칭, 모델 번호, 규격, 수량, 중량, 특징 등 및 집행인을 기록하며, 사진·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처분기록, 사진, 영상 자료와 권리침해 위조품 폐기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함께 조사를 대비해 보관해야 한다.

라 반부정당경쟁법[30] 개정 및 사법규정 변화

(1)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주요내용

2019년 4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이 의견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 보호범위 확대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개정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영어비밀 침해의 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침입" 방법을 추가하였고,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를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적 요건을 확대하였다.

제9조(구법)	제9조(신법)
①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업비밀[31]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도, 증뢰,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1) 절도, 증뢰, 사기, 협박, 전자침입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3)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여,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3)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여,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4) 타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도록 교사, 유인, 방조하여,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30) 동법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준하는 중국의 법률이다.

제9조(구법)	제9조(신법)
	② 경영자 이외의 기타 자연인, 법인, 그리고 비법인조직이 전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실시한 경우, 상업비밀침해로 간주한다.
② 제3자가 상업비밀 권리인의 직원, 이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전 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3자가 상업비밀 권리인의 직원, 이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본조 제1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법정손해액 상한 상향 조정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구법)	제17조(신법)
① ~ ② (생략)	① ~ ② (생략)
③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손해 배상 금액은 당사자가 권리 침해에 의해 당한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또한 손해배상금액에는 경영자가 권리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	③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손해 배상 금액은 당사자가 권리 침해에 의해 당한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적인 상업비밀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확정한 액수의

31)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규정의 원문에는 商业秘密로 표현되며, 영업비밀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중문표현과 동일하게 상업비밀로 번역하였다.

제17조(구법)	제17조(신법)
되어야 한다.	1배 이상 5배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금액에는 경영자가 권리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자가 이 법의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당한 실제손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④ 경영자가 이 법의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당한 실제손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책임 강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벌금 상한을 종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적용하는 벌금의 상한액도 종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하고,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 규정을 추가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책임을 강화하였다.

제21조(구법)	제21조(신법)
경영자가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자 및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증명책임 전환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소송 과정 중 증명책임전환 규정을 제32조에 신설하여, 피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로 전환되도록 하여 영업비밀 피침해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였다.

신설(구법)	제32조(신법)
	① 상업비밀 침해 민사 심판 과정에서 상업비밀 권리인이 초보증거를 제공하고, 주장하는 상업비밀에 대해 이미 보호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면서 상업비밀이 침해당했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하는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권리인이 주장하는 상업비밀이 본 법에서 규정하는 상업비밀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② 상업비밀권리인이 초보증거를 제공하고 상업비밀이 침해당했음을 합리적으로 표명하면서 이하의 증거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 (1) 권리침해혐의자가 상업비밀을 취득한 통로 또는 기회가 있고 그가 사용한 정보와 해당 상업비밀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표명한 경우 (2) 상업비밀이 이미 권리침해혐의자에 의해 누설, 사용되었거나 누설,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증거를 가지고 표명한 경우; (3) 상업비밀이 침해혐의자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기타 증거를 가지고 표명하는 경우

(2) 《최고인민법원 영업비밀침해 민사사건 적용법률에 대한 몇 가지 규정》[32] 시행

1)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의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정의

제1조 ① 기술 관련 구조, 원료, 조합, 처방, 재료, 샘플, 양식, 식물신품종번식재료, 공정, 방법 또는 절차,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터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등에 대한 정보는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의 기술정보에 해당한다.

② 경영활동에 관한 아이디어, 관리, 판매, 재무, 계획, 샘플, 입찰자료, 고객정보, 데이터 등의 정보는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의 경영정보에 해당한다.

③ 전항의 고객정보는 고객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및 거래습관, 의향, 내용 등 정보를 포함한다.

32) 2020년 8월 24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를 통과하여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

2) 비밀성 인정 및 비밀보호조치 관련 판단 기준

제3조 권리자가 보호를 청구한 정보가 침해행위가 발생할 때 해당 영역의 관련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민법원은 반부정당경재법 제9조 제4항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영업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소된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취한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의 상응한 비밀유지조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인민법원은 영업비밀과 그 운반체의 성질, 영업비밀의 상업가치, 비밀유지조치의 식별가능 정도, 비밀유지조치과 영업비밀의 대응 정도, 권리자의 비밀유지의사 등을 근거로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상업가치 판단 기준

제7조 ① 권리자가 보호를 청구한 정보가 대중에 알려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상업가치를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4항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생산경영활동에서 형성된 단계적 성과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해당 성과가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직원, 이전 직원의 범위

제11조 법인, 비법인조직의 경영, 관리 인원 및 노동관계가 있는 기타 인원은 인민법원이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3항의 직원, 전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법 제32조 제2항의 “실질적 동일”의 판단기준

제13조 ① 피소된 침해정보와 영업비밀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인민법원은 피소된 정보와 영업비밀이 반부정당경쟁법 제32조 제2항의 실질적 동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은 전항의 실질적 동일 여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a) 피소된 침해정보와 영어비밀의 차이 정도

(b) 해당 분야의 관련자가 피소된 침해행위의 발생 시에 피소된 침해정보와 영업비밀의 차이를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

(c) 피소된 침해정보와 영업비밀의 용도, 사용방식, 목적, 효과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

(d) 공유영역(public domain)에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상황

(e) 고려가 필요한 기타 사항

6) 경영자 이외의 침해자의 민사책임 부담, 배상액 확정시 고려사항

제16조 경영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반부정당경쟁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자가 부담할 민사책임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권리자가 영업비밀허가 사용료를 참고하여 피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확정을 청구할 때, 인민법원은 허가의 성질, 내용, 실제 이행상황 및 침해행위의 성질, 내용과 경위, 침해에 따른 결과 등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이 반부정당경쟁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영업비밀의 성격, 상업가치, 연구개발 비용, 혁신의 정도, 영업비밀로 인한 경쟁우위, 침해자의 주관적 과오, 침해행위의 성질, 내용과 경위, 침해에 따른 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04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가 전자상거래법[33] 중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내용

현재 중국은 전자상거래 규모와 발전 수준에 있어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알리바바, 징동, 샤오홍수 등을 포함하여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핀둬둬, 위챗 등 다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운영중에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및 규제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통지 및 상품삭제, 침해를 용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처벌 요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포함되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중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 주체들에 대하여 정의를 하여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 및 자체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규정하였다.

제9조

① 본 법에서 말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및 자체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② 본 법에서 말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자를 위해 인터넷 경영장소·거래중개·정보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거래 쌍방 또는 다자가 독자적으로 거래 활동을 전개하도록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을 말한다.

③ 본 법에서 말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말한다.

33)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2)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제정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권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3)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

지식재산 권리자가 침해를 당한 경우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접속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제42조
① 지식재산권 권리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통지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③ 잘못된 통지로 인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손해를 본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악의적으로 잘못된 통지를 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이 발생된 경우, 배로 배상책임을 진다
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플랫폼 내 경영자는 통지를 전달받으면 플랫폼 경영자에게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과 해당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플랫폼 경영자는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플랫폼 내 경영자의 성명을 전달하고, 관련 주관부서에 고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알려야

한다. 15일 이내에 권리자가 소송 제기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취한 조치를 신속히 중지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달된 통지를 받은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성명에는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성명을 접수한 후, 통지를 발송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그 성명을 전달하고, 관련 주관부서에 고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성명을 전달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인에게 도달한 후 15일 내에 권리인이 고발 또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취했던 조치를 신속하게 중지해야 한다
제4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 법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받은 통지, 성명, 그리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공시해야 한다

(4) 법률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법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 행정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리[34)]

(1) 배경 및 의미[35)]

2019년 11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판공청은《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수립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 관리 표준을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중심으로《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리》를 국가표준(GB/T 39550-2020)으로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새로운 도전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표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등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랫폼 경영자 등 관련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소비자 및 사회 대중의 지식재산권 존중 및 이해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제4장)

전자상거래의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정보관리, 관리제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초점은 사업자의 입점 플랫폼에 대한 정보 기록과 상품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전시,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 침해 통지 발송, 침해 통지 접수, 통지 처분 및 결론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정한다.

2)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정보 플랫폼 요구(제5장)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정보 플랫폼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총체적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증거관리, 감독 조사, 신기술 적용 등 다섯 가지이다.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정보 플랫폼은 관련 정보의 저장, 증거 관리, 소급관리, 검증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

34) "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保护管理",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지식산권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2020.11.9. 발표됨

35) 이하 내용은 "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保护管理" 国家标准解读을 정리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의 자세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IP-Report 제2020-19호를 참고바란다.

3) 지식재산권 관리 조직(제6장)

총체적 요구, 기구 및 기능, 정보 및 지식자원 등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관리기구와 전담·겸직인력을 두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대신하도록 하고, 홍보, 교육, 커뮤니케이션,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련 사법 규정 변화

(1) 《최고인민법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지도의견[36]》

1) 인민법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재권 분쟁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엄격하게 지재권 보호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모조품, 불법복제 등의 침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지재권 권리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등 각 주체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하여 심리할 때,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9조[37]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또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행위가 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상품 판매 페이지의 "자영(自營)"표시, 상품 실물에 표시된 판매주체의 정보, 영수증 등 거래서류에 표시된 판매주체의 정보 등

3)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고 있거나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권리의 성질, 침해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술적 조건, 침해를 구성하는 기초 증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원칙에 따라야 하며, 삭제, 차폐, 접속 차단 등 플랫폼에서 내리는 방식에 한정하지 않는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여러 번,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거래와 서비스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4) 전자상거래법 제41조, 42조, 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권리 유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라 플랫폼 내 통지, 성명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치가 당사자가 법에 따른 권리 보호 행위에 불합리한 조건이나 장애를 두어서는 안된다.

5) 전자상거래법 제42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지재권 권리증명 및 권리자의 정확한 신분 정보, ②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피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 ③ 침해구성을 위한

3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电子商务平台知识产权民事案件的指导意见", 2020.9.10.

37) 본 장 가. (1)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위 참조

기초적인 증거, ④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보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특허권에 관한 통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기술특징이나 디자인 특징 대비 설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 평가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인민법원은 통지를 한 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3항의 "악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위변조된 권리증명서 제출, ② 침해대비 감정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허위로 제출, ③ 권리상태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통지 발송, ④ 통지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도 즉시 철회 및 정정하지 않는 경우, ⑤ 오류가 있는 통지를 반복 제출하는 경우 등

7)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전자상거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플랫폼 내 경영자의 정확한 신분 정보, ②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③ 권리 귀속 증명, 등록증명 등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증거, ④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보증 등. 성명은 반드시 서면형식이어야 한다. 특허권에 대한 성명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기술특징, 디자인 특징 대비 설명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8) 인민법원이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제출한 성명의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위조 또는 무효의 권리증명, 등록증명 제출, ② 허위정보 또는 명백한 오해의 소지가 포함된 성명, ③ 권리자의 통지에 이미 침해가 인정되는 효력있는 재판이나 행정처분 결정이 첨부된 경우도 성명을 발송한 경우, ④ 성명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적시에 철회·정정하지 않는 경우

9) 상황이 급박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품을 즉시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합법적 이익에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품 링크를 즉시 복구하지 못하고, 통지인이 통지를 즉시 철회하지 않거나 통지문 발송 중지 등 행위를 하지 않아, 그 합법 이익에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는 전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0) 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침해구성의 기초적인 증거, ② 침해성립 가능성, ③ 침해행위의 영향 범위, ④ 악의적 침해 여부와 중복 침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침해상황, ⑤ 피해 확산

방지 효과, ⑥ 플랫폼 내 경영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⑦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 및 기술요건 등

플랫폼 내 경영자가 통지 관련 특허권이 이미 국가지식산권국에 의하여 무효선고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1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침해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지식재산권 보호규칙 제정, 플랫폼 내 경영자의 경영 심사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플랫폼 내 점포 유형을 "플래그십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등으로 표시한 경영자의 권리 증명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③ "고급모방", "모조품"등의 문구를 포함한 침해상품의 링크, 불만사항이 제기된 후 재등록된 침해상품 링크를 필터링 및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심사 및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0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2018년 3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은 2019년 12월 13일 1단계 무역합의에 타결하면서 휴전상태에 돌입하였다. 1단계 무역합의 중 지식재산 관련 조치사항들은 미국의 지식재산이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행정시스템 정비 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2018년부터 취해온 일련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은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으며, 중국이 그간 진행해온 법률 및 제도 개선의 속도를 고려할 때, 일부 제도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액 상향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침입'을 침해의 유형에 추가한 점,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책임자 범위 확대, 증명책임의 전환 등은 비록 법 개정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전에 완료되었지만, 그간 미중 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을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특허법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법정손해액 상·하한을 각각 3배, 5배 증액하였고, 배상액 확정을 위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서 중국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은 완비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향후 사법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특허권 부여대상에서 주목할 것은 부분디자인 제도과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4차 특허법 개정 초안부터 부분디자인 제도는 반영이 되어 있었으므로 특이할 사항은 아니나, 중국의 디자인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업디자인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선점을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에 대하여 그간 규정과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점에 비하여 개정 상표법과 후속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국 당국이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상표초보심사, 이의신청 및 평심업무단계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집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이 지식재산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강하게 요구한 사항이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개정 반부정당경쟁법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법률 개정과 함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법규 해석 및 적용을 구체화하였다.

끝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복제 및 모조품 단속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통지와 상품삭제 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대책임에 대한 사항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경영자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통지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시사점

중국은 지속적인 지식재산 출원량 증가로 이미 지식재산대국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악의적 상표선점, 불법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발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러한 법규 및 제도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명백하지만,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상당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하여 지식재산보호를 강화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정상화되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된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과 로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중국의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민사1심 사건은 443,326건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고, 특허 관련 사건은 28,528건으로 전년대비 28.09%나 증가하였다[38].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중국에서는 지식재산을 침해당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정부 등 유관 기관도 같은 맥락의 정책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연간 등록된 발명특허가 53만건에 달하고, 실용신안까지 포함할 경우 290만여건이 등록되고 있고[39], 중국의 특허심사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될 위험도 고려하여 수출 전 특허 리스크 해소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양적 성장 후에는 질적 전환이 뒤따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국 시장에서 지식재산 리스크를 완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중국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출원이라고 하겠으며,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된 중국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8) "2020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2020년 중국 지식재산보호현황)",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3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발표, 2020년지식산권주요통계데이터, 2021. 1. 27. (https://www.cnipa.gov.cn/col/col87/index.html)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소재 국가 지원

1. 지재권 상담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 현지 IP-DESK 전담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 소개, 지재권 출원 절차, 지재권 침해 · 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상담방법]

IP-DESK	현지 IP-DESK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현지 전문로펌을 통한 지재권 전문상담

2.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 디자인 출원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 중견기업(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상표한도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디자인 한도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지원비율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8건(국가제한 없음)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지원시 선택한 법률사무소와 상표·디자인 출원 계약
신청기업	출원신청	기업부담금 납부 및 출원신청
KOTRA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3.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 중견기업(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지원내용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지원한도	$10,000/건(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공동신청시 기업수만큼 한도증액								
지원비율	최대 70% 지원 (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50%→30%)								

※ 협의체 공동신청은 한류편승 관련 사건 우선지원 예정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법률사무소(침해 조사 기관)와 계약
신청기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기업부담금 납부 및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침해감정서 결과보고
KOTRA	비용지원	IP-DESK가 결과보고서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지원서비스 안내」▶「해외진출지원」▶「해외투자진출」▶「지식재산권보호」페이지 내「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1. 법률자문 지원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 지원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 · 중견기업
-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 일부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 4건/1社 (국가별 통합, 출원·상담 지원 통합)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 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법률자문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법률자문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피침해 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社 (침해조사, 행정단속 동시신청시 1건 인정)
행정단속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피침해 실태조사(단속지원)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실태조사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실태조사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현황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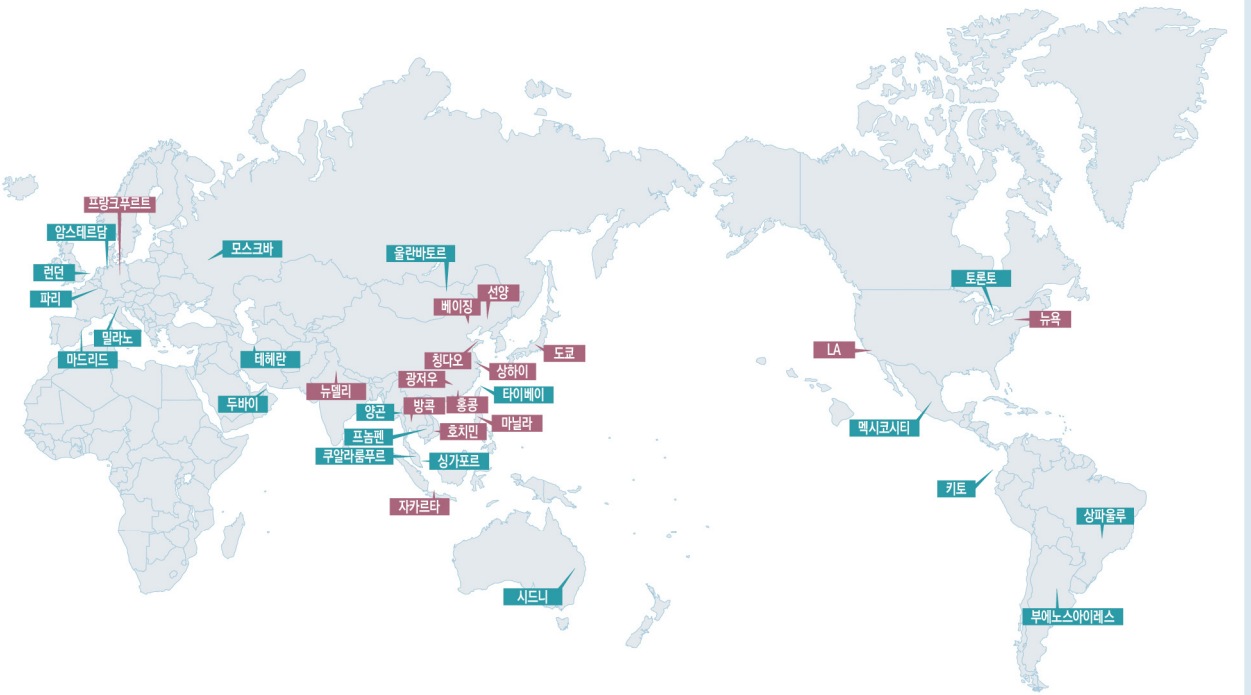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9개국 15개소
IP-DESK 미소재 국가 사업수행 : 20개국 20개소

IP-DESK 연락처

국가		전화	이메일
미국	LA	1-323-954-9500(142)	laipdesk@kotra.or.kr
	뉴욕	1-646-918-5594	graceahn@kotra.or.kr
독일	프랑크푸르트	49-69-2429-9299	donghee.lee@kotra.or.kr
일본	도쿄	81-3-6273-4638	dhwon@kotra.or.kr
태국	방콕	66-2-035-1558	bkk_ipdesk@kotra.or.kr
베트남	호치민	84-28-3822-3944(134)	seaegghr@kotra.or.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574-1522(Ext. 140)	juheelee@kotra.or.kr / juheejkt@gmail.com
필리핀	마닐라	63-2-8894-4084	manila@kotra.or.kr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514)	lsoojung@kotra.or.kr

국가		전화	이메일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47)	ipkotra@kotra.or.kr
	상하이	86-21-5108-8771(118)	shanghaiip@kotra.or.kr
		86-21-5108-8771(116)	MF.Jin@kotra.or.kr
	칭다오	86-532-8388-7931(209)	qdxuxiang@kotra.or.kr
	광저우	86-20-2208-1600(1405)	shane.bai@kotra.or.kr
	선양	86-24-3137-0770(813)	ipdesksy@kotra.or.kr
	홍콩	852-3465-2921	hkg_ipdesk@kotra.or.kr

IP-DESK 미소재 국가 연락처

해외지재권실 : 02-3460-3351, ip-desk@kotra.or.kr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KOTRA자료 21-166

발 행 인 : 유 정 열
발 행 처 : KOTRA (베이징무역관(IP-DESK))
발 행 일 : 2021년 8월
주 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02-3460-3357
홈페이지 : www.kotra.or.kr
저 자 : 심상희 변리사
SHANGHAI J&J IP CONSULTING
(上海卓渠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ISBN 979-11-6490-966-7 (95320)
979-11-6490-966-7 (95320)(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